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534
------------	-----

2023년 6월 21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23년 2월 6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3년 6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가. 제안이유

-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제 주차수요 대비 월정기권 수요가 월등히 높은 노상주차장의 주차실태를 반영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와 주차 수입의 확충을 통해 주차수요관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이용 대상 확대(안 제25조의2 제1항~제4항)
  - 이용대상 : 여성 →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시간제 주차수요는 낮고 정기주차 수요는 높은 노상주차장 중 주차실태 등 지역 여건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안 별표1 비고 10호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2023년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市 예산담당관 및 의회 협조 필요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3.~2022.11.23.

○ 제출의견 : 있음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이용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하던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들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도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25조의2), 주차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 월 정기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1 10호)

### 나. 검토의견

#### ■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관련 검토(안 제25조의2)

##### 1)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관련 규정 및 현황

- 현행 「주차장법」 제6조제2항1)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1)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 설비기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 제25조2)에서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이라 한다)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여성우선주차장’은 여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도입·운영되었음
- 2023년 1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은 총 71개소, 2,001면(전체 구획면의 약 11.87%)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각 자치구에서 별도 조례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는 여성우선주차장은 532개소, 7,668면으로 민간 주차장(대형매장, 백화점 내 주차장 등)의 여성우선주차구획 현황을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세부 현황<sup>3)</sup>

	구획면 총계	일반	장애인	여성 우선	임산부	경차	전기차	환경 친화	나눔카
공영 주차장 (131개소)	16,860	12,711	575	2,001	161	377	206	534	295
		75.39%	3.41%	11.87%	0.95%	2.24%	1.22%	3.17%	1.75%

- 참고로 여성우선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sup>4)</sup>과 달리 이용대상자가 아닌 운전자가 여성우선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의 별도 제재를 받지 않음

## 2) 조례 개정의 필요성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우선주차장’의 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 확대하며 그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임
-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는 0~9세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기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종합계획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sup>5)</sup>’를 발표하면서 2009년 ‘여성행복프로젝트’를 통해 도입한 ‘여성우선주차장’을 주차장 안전성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가족우선주차장<sup>6)</sup>’으로 조성

3) 서울시 공영주차장 현황(서울시 주차계획과 내부 자료, 2023.1.31. 기준)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 (과태료)

5)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2022.08.)** : 양육자 행복에 초점 맞춘 서울시 최초 종합계획

- 4대 분야(안심돌봄·편한외출·건강힐링·일생활균형) 28개 사업, 5년간 14조 7천억 투입

6) 입법예고 결과('22.11.3.~11.23.): 市 양성평등담당관(사업 주관부서)에서 “가족우선주차장”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개정안에 수정하여 변경함

##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sup>7)</sup>은 국내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0.626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2021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788만명 중 약 13.7%인 107만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sup>8)</sup>로 나타나는 등 저출산 지속 및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비하여 여성만이 아닌 다양한 교통약자<sup>9)</sup>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이해된다 할 것임
- 다만, ‘여성우선주차장’의 경우 이용대상(여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가족배려주차장’의 경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족인지 확인 여부가 불가능하고, 서울시 1인 가구<sup>10)</sup>는 2021년 기준 14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서울시 민선8기의 주요 시정 방향이

7) 합계출산율 통계(Total fertility rate)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전국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자치시	제주 특별자치도	경기도
2021년	0.808	0.626	0.728	0.785	0.778	0.896	0.810	0.940	1.277	0.951	0.853

※ 합계출산율 정의: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8) 서울시 운전면허 소지자(연령별) 통계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서울열린데이터광장)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계	7,712,062명	7,758,060명	7,810,868명	7,864,542명	7,882,536명
65세 이상	775,106명 (10.1%)	847,014명 (10.9%)	912,500명 (11.7%)	1,001,483명 (12.7%)	1,079,907명 (13.7%)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10) 서울시 1인가구 현황 -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서울열린데이터광장)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180,540명	1,229,421명	1,299,787명	1,390,701명	1,489,893명	
성별	남성	561,524명	581,944명	611,561명	650,999명	698,324명
	여성	619,016명	647,477명	688,226명	739,702명	791,569명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이라는 명칭 대신에 “교통약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2023년 3월 언론보도<sup>11)</sup>에 따르면 ‘여성우선주차장(여성안심주차장)’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약 53.6%가 ‘여성 및 교통약자 모두를 배려하는 주차장으로 개편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약 28.5%는 ‘실제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 결국 아무나 주차하는 공간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고,

현행 여성우선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가족배려주차장의 경우에도 강제력을 지닌 별도의 법적 제재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여성의 주차장 이용편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함

- 아울러 서울시가 제출한 비용추계에 따르면<sup>12)</sup>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할 경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약 7억 9천만원(1,988면\*400천원),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약 30억원(7,668면\*400

11) 문화뉴스(2023.03.13.) : 명칭 바뀌는 여성우선주차장 제각기 다른 인식 “성차별 조장”이라는 인식도..

< 리얼서치코리아 설문조사 결과 >

- 응답자수 : 4,352명(95% 신뢰수준, 허용오차 ±1.4%)

- 조사기간 : 2023.2.22.~2.26. - 조사방법 : 앱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12) 1구획당 기존 삭선 및 신규도색비용 400,000원 추정시

- 시 공영주차장 여성우선 주차구획 1,988면\*400,000원 = 795,200천원

- 25개 자치구 여성우선 주차구획 7,668면\*400,000원 = 3,067,200천원

천원, 추정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낭비 문제가 우려될 수 있으며 별도의 행정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 노상주차장 월 정기권 발행 관련 검토(안 별표1 10호 신설)

- 현행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요금과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6조 및 [별표 1]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요금을 1~3급지<sup>13)</sup>로 나누고 1회, 1일, 월정기권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고 있음<sup>14)</sup>

1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 비교

**3.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다. 3급지: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14) 급지는 「주차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언급되지 않으며 **조례의 [별표 1]에 정의함**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동 개정조례안은 시간제 주차수요는 낮고 정기 주차수요는 높은 노상주차장<sup>15)</sup> 중 지역 여건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의 월정기권 발행”에 대한 규정을 [별표 1] 비교 항목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주차장의 원활한 설치와 관리를 위해 지난 2020년 조례 개정<sup>16)</sup>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 지하철역 반경 등을 고려하여 ‘급지체계(5급지→3급지로 변경)’를 단순화하면서 4·5급지 노상주차장 정기권 요금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에는 노상주차장 정기권 요금이 별도 책정되지 않게 되었음<sup>17)</sup>

15) 「주차장법」 제2조(정의) 제1호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6) 의안번호 1732호(2020.9.15.)

- 안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시장)
- 공포일: 2020.10.05.(공포번호 제7689호)

17) [별표 1]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 내용 비교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변경 전(삭제)				개정 후(2020.9.15.)-현재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	-	500	5,000	-	-
2급지	250	4,000	-	-	250	4,000	-	-
3급지	150	3,000	-	-	150	3,000	-	-
4급지	100	2,000	50,000	-	급지 삭제			
5급지	50	1,000	30,000	20,000				

- ‘2021년 주차장 및 차고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sup>18)</sup> 정기권을 판매·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상 주차장의 위탁 업체가 현금 및 계좌이체로 정기권을 판매·징수하여 주차수입금을 누락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감사가 종결된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상주차장 정기권 판매금지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서울시설공단에서 실시한 ‘2022년도 민간위탁 정기권 판매 실태 점검 결과’<sup>19)</sup>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정기권을 판매하는 공영주차장 36개소 중 정기권을 판매·징수할 수 없는 노상주차장 20개소에서 월 70,000원~240,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관련 기준 삭제 후에도 관행적으로 판매·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정기적인 주차 수요에 따라 정기권 판매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일부 노상주차장들의 판매 근거를 규정하여 조례 위반 운영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이해됨

---

18) 주차장 및 차고지 안전 유지관리실태 감사(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2473호('21.2.25.))

- 감사기관: 서울특별시 안전감사담당관

- 감사기간: 2020.10.14.~11.26.

- 감사범위: 2016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19) 2022년도 민간위탁 정기권 판매실태 점검(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22672호('22.11.09.))

- 점검자: 본사 민간위탁 담당자 1명 + 해당 권역 패트롤 1명

- 점검기간: '22.10.19.~10.31.

- 점검대상: 정기권 판매주차장 36개소 (노상주차장 20개소, 노외주차장 16개소)

- 점검방법: 주차장별 정기권 판매실태 및 실 주차현황 점검

- 다만, 노상주차장을 상시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주차면수가 감소되고, 노외주차장 정기권 요금에 따라 급지를 반영하여 요금 책정시 일부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임

※ 제3차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정기권 판매현황<sup>20)</sup>

연번	주차장명	주차면수	회전율('22년)	급지		정기권 판매		비고
				개편전	현재	수량	금액(원)	
1	방화로	59	-	4	3	26	80,000	
2	대림역2	35	40%	3	1	15	200,000	
3	가마산고가밀	18	173%	3	3	3	100,000	고가 밀
4	가산동금천교	37	68%	2	2	20	100,000	고가 밀
5	독산동금천교	21	104%	2	1	12	120,000	고가 밀
6	온수역(남)	42	102%	4	1	24	70,000	노외주차 형태
7	대림역	18	207%	3	1	3	100,000	
8	문래1동	11	132%	2	3	5	100,000	
9	영등포로터리	10	160%	2	3	3	100,000	고가 밀
10	동작대교(위)	47	148%	3	1	5	100,000	별도 진출입로
11	봉천복개3	62	30%	2	3	30	220,000	
12	여의서로	84	58%	1	3	25	220,000	
13	원효대교 남단	13	51%	1	3	8	240,000	고가 밀
14	해군본부앞	20	214%	2	2	10	170,000	별도 진출입로
15	동호대교(남)	18	58%	4	3	5	70,000	대교 밀
16	성내역(잠실나루역)	28	101%	3	2	1	120,000	지하철 교량 밀
17	영동6교밀	39	25%	3	2	10	100,000	고가 밀
18	옥수역	31	139%	4	1	18	70,000	고가차도 옆
19	청계8	103	-	1	1	5	160,000	
20	도봉로15길	16	115%	3	2	5	90,000	

20) '2022년도 민간위탁 정기권 판매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자료로, 주차장 현황은 일부 변동이 발생될수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제2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우선주차장”을 각각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제2호 중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를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3에 따른다.

별표1 중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은 주차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요금은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요금을 따른다.

별도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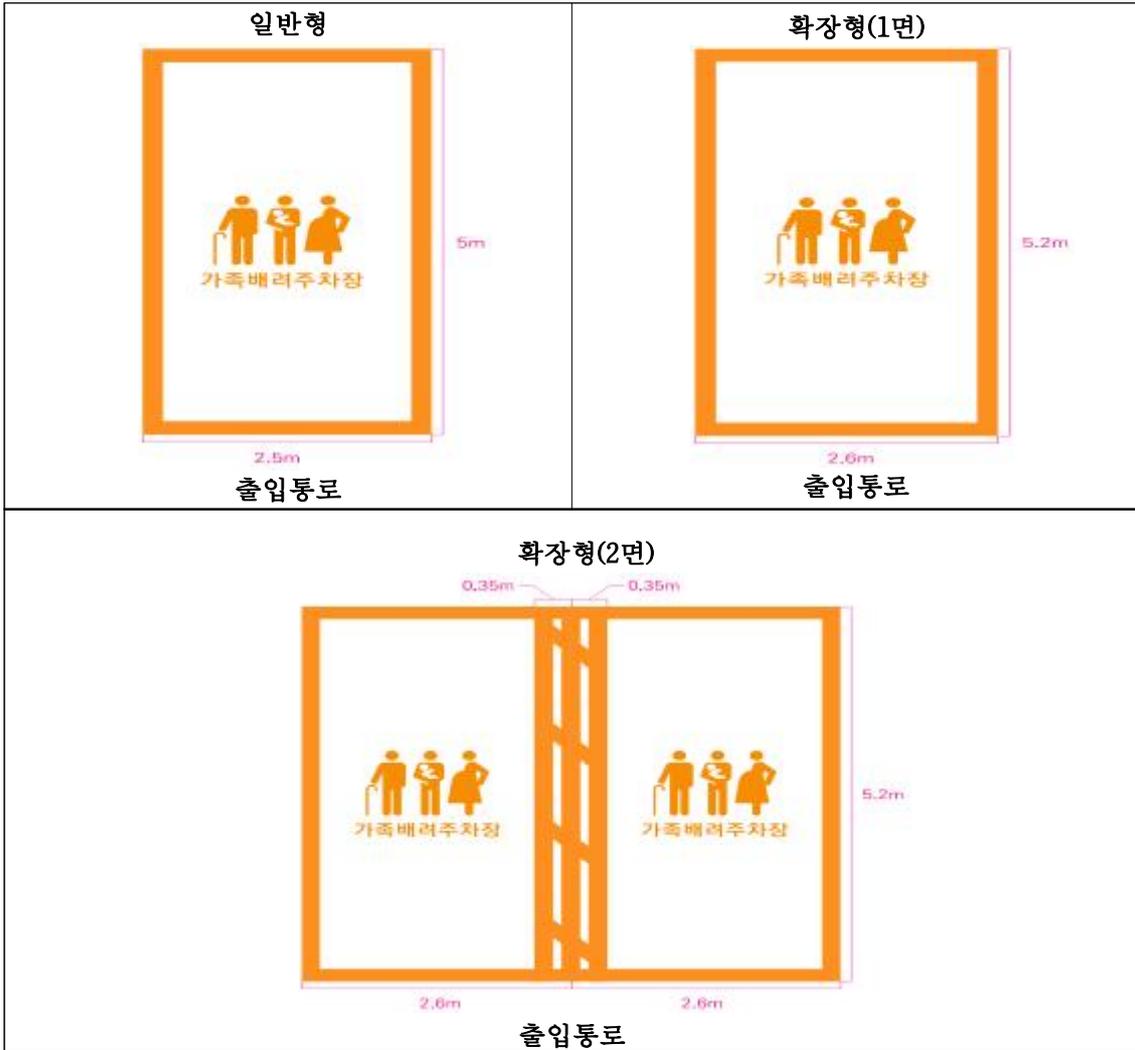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여성우선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5조의2제3항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제25조의2제4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한다.

[별도 제3호 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5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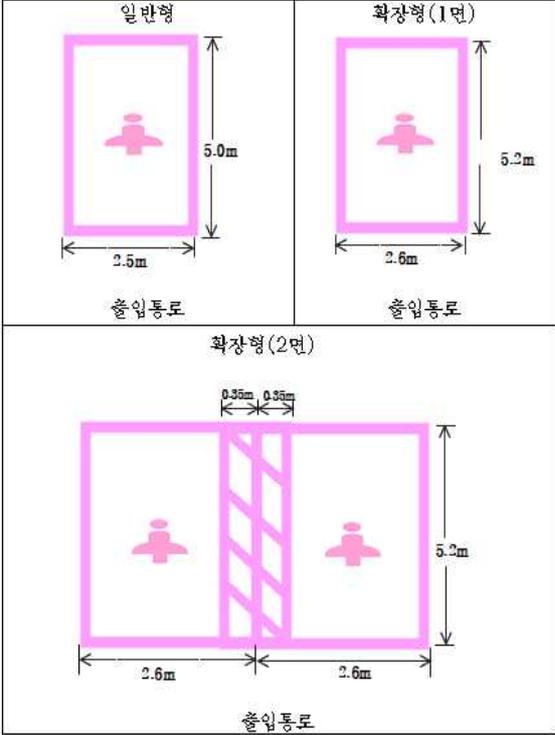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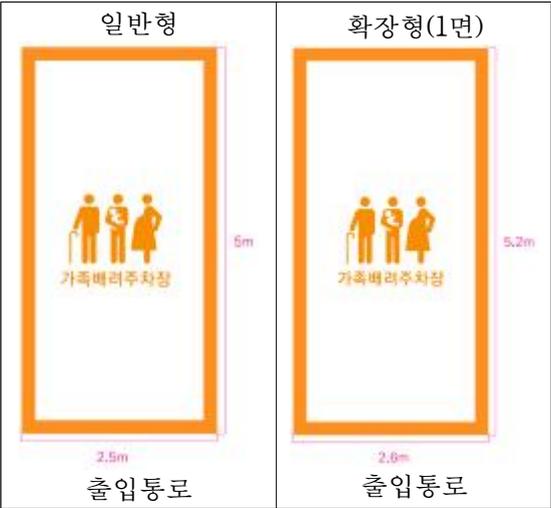
- 비 고 -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 [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p> <p>&lt;신 설&gt;</p> <p>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p>	<p>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p> <p>-----</p> <p>-----</p> <p>-----</p> <p>-----</p> <p>-----</p> <p>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p> <p>-----</p> <p>-----</p> <p>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p> <p>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p> <p>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p> <p>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p> <p>③ -----</p> <p>-----</p>

현행	개정안
<p>하는 <u>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u>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p> <p>③ <u>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u>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략)</li> <li>주차장 출입구 또는 <u>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u>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li> <li><u>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u></li> <li><u>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u> 다음으로 근접한 곳</li> </ol> <p>④ <u>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u>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u>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u>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 <u>가족배려주차장</u> ----- ----- -----.</p> <p>④ <u>가족배려주차장</u>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과 같음)</li> <li>----- <u>승강기, 계단과 가까워</u> ----- ----- -----</li> <li><u>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u></li> <li><u>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u></li> </ol> <p>&lt;삭제&gt;</p> <p>⑤ <u>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u>의 표시는 <u>별도3에 따른다.</u></p>

현행	개정안
<p>[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6조제1항 관련) &lt;비 고&gt; 1.~9. (현행과 같음) &lt;신 설&gt;</p>	<p>[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6조제1항 관련) &lt;비 고&gt; 1.~9. (생략) 10. <u>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은 주차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요금은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요금을 따른다.</u></p>
<p>[별도 제3호 서식]</p> <p>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p>  <p>- 비 고 -</p> <p>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 [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p>	<p>[별도 제3호 서식]</p> <p>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5항 관련)</p> 

현행	개정안
<p>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p> <p>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가로 75cm × 세로 155cm</p> <p>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p> <p>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p>	<div data-bbox="778 331 1329 846" data-label="Diagram"> </div> <p>- 비 고 -</p> <p>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 [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p> <p>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p> <p>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p>